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19일, 박춘희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춘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및 홍보 · 교육(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박춘희 의원
- 제안일자 : 2025. 9. 19.
- 회부일자 : 2025. 10. 13.
- 상정일자 : 2025. 10. 13.

2. 제안이유

- 평창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및 홍보 · 교육(안 제6조 ~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놀 권리(玩耍)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
- 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사업 추진 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

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및 안 제7조(홍보 및 교육)에서 관련 추진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홍보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불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 략)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박춘희 의원)

의안 번호	475
----------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9일

발의자: 박춘희 의원

찬성자: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 평창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및 홍보·교육(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 나. 예산조치: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2025. 8. 26. ~ 2025. 9. 3.(9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가족복지과)	사유	의회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조례 존재	기존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시설 조성 등의 목적과 유사	[수용하지 아니함] 여러 조례에 걸친 문구의 유사성으로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사 조례 존재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놀이기구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 여가활동 관련 조항과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포함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의 정서함양, 문화·체육 활동 지원에 관련한 내용 포함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것이며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처럼 협약 제31조의 권리측면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	유사 조례 존재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아동복지증진사업과 유사하며, 제6조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놀이문화시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위와 마찬가지로 놀 권리 보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상 아동 또한 범위가 다름. 또한 여러 지자체에도 아동복지 조례, 놀이시설 설치조례, 놀 권리 보장조례

<p>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p> <p>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의 협력사업</p> <p>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 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p>			<p>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ex 서울특별시 동작구)</p>
<p>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 수는 아동의 놀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 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유사 조례 존재</p>	<p>「평창군 아동복지 증 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지역사회 협 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내용 중복</p>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인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
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범
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
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 11.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생략)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관련,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추진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연락처	(033) 330 - 2124